공 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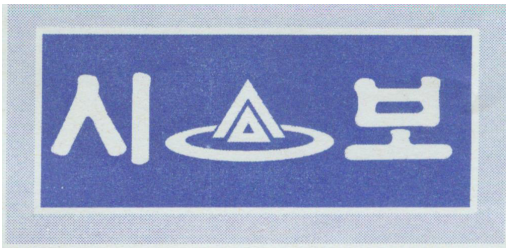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44호 2012. 1. 2.(월)

【규 칙】

○ 제413호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 1
○ 제414호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9
○ 제415호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고 시】

○ 제119호 유구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22
○ 제121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35
○ 제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47
○ 제124호 도시관리계획(학교:공주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52
○ 제1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65
○ 제12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66

【공 고】

○ 제2011-1120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69
○ 제2011-112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완료 공고 ····· 81
○ 제2011-113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83
○ 제2011-1140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86
○ 제2011-115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 96
○ 제2011-1154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9
○ 제2011-1157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04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2)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1월　2일

공주시 규칙 제 413 호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공주시 일상감사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담당관·과·팀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대상업무 및 기준	비고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시장 및 결재권자가 결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업무	○ 총액 2억원 이상 공사(도급+관급) ○ 총액 7천만원 이상 용역 ○ 총액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1품목당) ○ 설계변경 등으로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거나,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종전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발주 10일전
○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시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천만원 이상	최종 결재전
○ 그 밖에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임차료 등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법령 준수여부 ※ 5천만원 이상	최종 결재전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제5조제2항 관련)

제 목:

1. 주요내용

2.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첨서류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제7조제1항 관련)

제 목:

1. 검토내용

2. 조치의견

검토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기 조치 의견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감사업무부서의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제 목: _____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반영여부(요약)

4. 관계자료 및 그 밖에

위와 같이 처리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제7조제3항 관련)

일련번호	일상감사 결과 통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담당자
	통지일자	사업개요 (시행부서)	통지내용	접수일	처리내용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1월　2일

공주시 규칙 제 414 호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 본문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 ----------
가. 3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설비 및 전문공사는 2억원 미만	가. 2억원 ----------. ---- ---------- --------- 1억원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3. ---------- 3억원 ---------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1월　2일

공주시 규칙 제 415 호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량정수관리”라 함은”을 ““차량정수관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용차량”이라 함은”을 ““전용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전용차량”이라 함은”을 ““의전용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용차량”이라 함은”을 ““업무용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업용차량”이라 함은”을 ““사업용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용차량”이라 함은”을 ““화물용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수용차량”이라 함은”을 ““특수용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용기관”이라 함은”을 ““사용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비”라 함은”을 ““정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수리”라 함은”을 ““수리”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준연한은”을 “내용연수는”으로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의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쓴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준연한을 초과한”을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 종류 및 차 형태별 배정대상·내용연수·최단운행거리

차 종류	차 형태	배정대상	내용연수 최단운행거리
승 용 (전 용)	○ 대형승용차	○ 시장 ○ 의회의장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중형승용차	○ 부시장	
승 용 (의전용)	○ 중형승용차	○ 본청 ○ 의회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	○ 중형승용차	○ 시청 ○ 5급 이상의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소형승용차	○ 사용기관	
	○ 경형승용차	○ 사용기관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 종 차량을 말한다)	○ 사용기관	
승합용	○ 대형승합차	○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 중형승합차	○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소형승합차	○ 사용기관	
	○ 경형승합차	○ 사용기관	

차 종류	차 형태	배정대상	내 용 연 수 최단운행거리
화물용	○ 대형승합차	○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중형승합차	○ 사용기관	
	○ 소형승합차	○ 사용기관	
	○ 경형승합차	○ 사용기관	
특수용	○ 청소차	○ 사용기관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구급차	○ 사용기관	
	○ 분뇨차	○ 사용기관	
	○ 진료차	○ 사용기관	
	○ 이동수리차	○ 사용기관	
	○ 트럭트렉타	○ 사용기관	
	○ 트레일러	○ 사용기관	
	○ 렉카차	○ 사용기관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형태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및 짚형 승용차
본청		7대	1대 (시장 전용)	3대 (의전용 1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3대
4급 기관장 (직속기관·사업소 포함)	정원 100명 이상	2대		1대	1대
	정원 100명 미만	1대		1대	
5급 기관장 (읍·면)	인구 4만 이상	2대		1대	1대
	인구 2만 이상 또는 정원 30명 이상	1대		1대	
의회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 전용)		1대

※ 경형승용차: 각 종 지도·단속 등 출장이 많은 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수를 배정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 형태 및 대수
통 근 용	가. 본청: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 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그밖에 사업용	○ 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 형태 및 대수
도로사업용	○ 본청: 도로의 연장·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연장 60킬로미터 당 1대를 배정
식량증산용	○ 본청: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및녹지 사 업 용	○ 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 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 업 용	○ 본청: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 본청: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 용	○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 밖에 사업용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용기관: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차량용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 형태 및 대수
청 소 용	○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 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명 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에 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1. 차 종류별·차 형태별 분류번호

차 종류별	차 형태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가 1
	○ 중형승용차	가 2
	○ 소형승용차	가 3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4
	○ 경형승용차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나 1
	○ 중형승합차	나 2
	○ 소형승합차	나 3
	○ 경형승합차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다 1
	○ 중형화물차	다 2
	○ 소형화물차	다 3
	○ 경형화물차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라 1
	○ 앰브란스	라 2
	○ 분뇨차	라 3
	○ 진료차	라 4
	○ 이동수리차	라 5
	○ 급수·살수차	라 6
	○ 트럭트렉타	라 7
	○ 트레일러	라 8
	○ 렉카차	라 9
특수용차량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 형태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주 - 가2 - 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주 - 다1 -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차량정수관리”라 함은 차량을 차 종류,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 “차량정수관리”란 ---------- ---------- ---------- ----------.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 ---------- ---------.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 ---------- ----------.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 ---------- ----------.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짚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 ---------- ---------- ----------.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 ---------- ---------- ----.

현 행	개 정 안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 ---------- ----------.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를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 ---------- ---------- ---------- ----------.
9.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비”란 ---------- ---------- ---------- ---------- ----------.
10.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 ---------- ---------- ----------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 종류는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 종류 및 차 형태별 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 ---------- ---------- ---------- - 내용연수는 ----------.
제13조(차량교체승인) ① (생 략)	제13조(차량교체승인)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형태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1. ----------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고시 제2011 - 119호

유구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 농공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2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공 주 시 장

▣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정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일원
변경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227,960.9㎡
변경 - 227,961.3㎡ (증 0.4㎡)

※ 확정측량 오차 수정에 따른 면적변경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공주시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 사업 시행자 : 웅진코웨이(주), 웅진식품(주)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기 간 : 2009년 ~ 2011년 12월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식료품제조업(C10)

◦ 1차 금속제조업(C24)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변경)계획표 >

구 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27,960.9	증) 0.4	227,961.3	100.00
산업시설용지		145,222.0	증) 5,255.2	150,477.2	66.01
지원시설용지		2,598.0	증) 1,269.4	3,867.4	1.70
녹지용지		55,881.1	감) 5,337.1	50,544.0	22.17
공공시설용지	소 계	24,259.8	감) 1,187.1	23,072.7	10.12
	도 로	18,870.0	감) 800.8	18,069.2	7.93
	보행자도로	1,223.9	증) 65.4	1,289.3	0.56
	주 차 장	1,380.0	감) 0.1	1,379.9	0.61
	배 수 지	587.9	-	587.9	0.26
	체육시설	1,602.0	감) 453.0	1,149.0	0.50
	공원녹지	596.0	증) 1.4	597.4	0.26

< 토지이용계획(안)도_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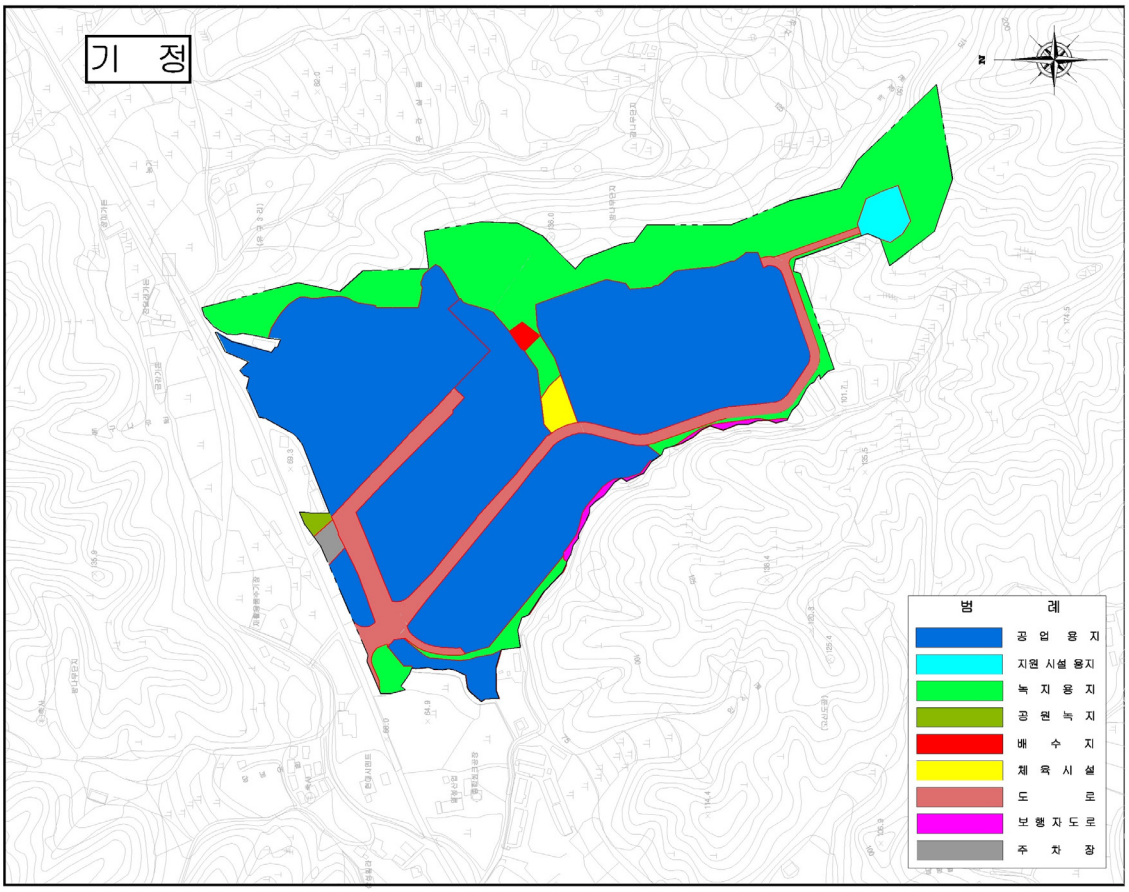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도_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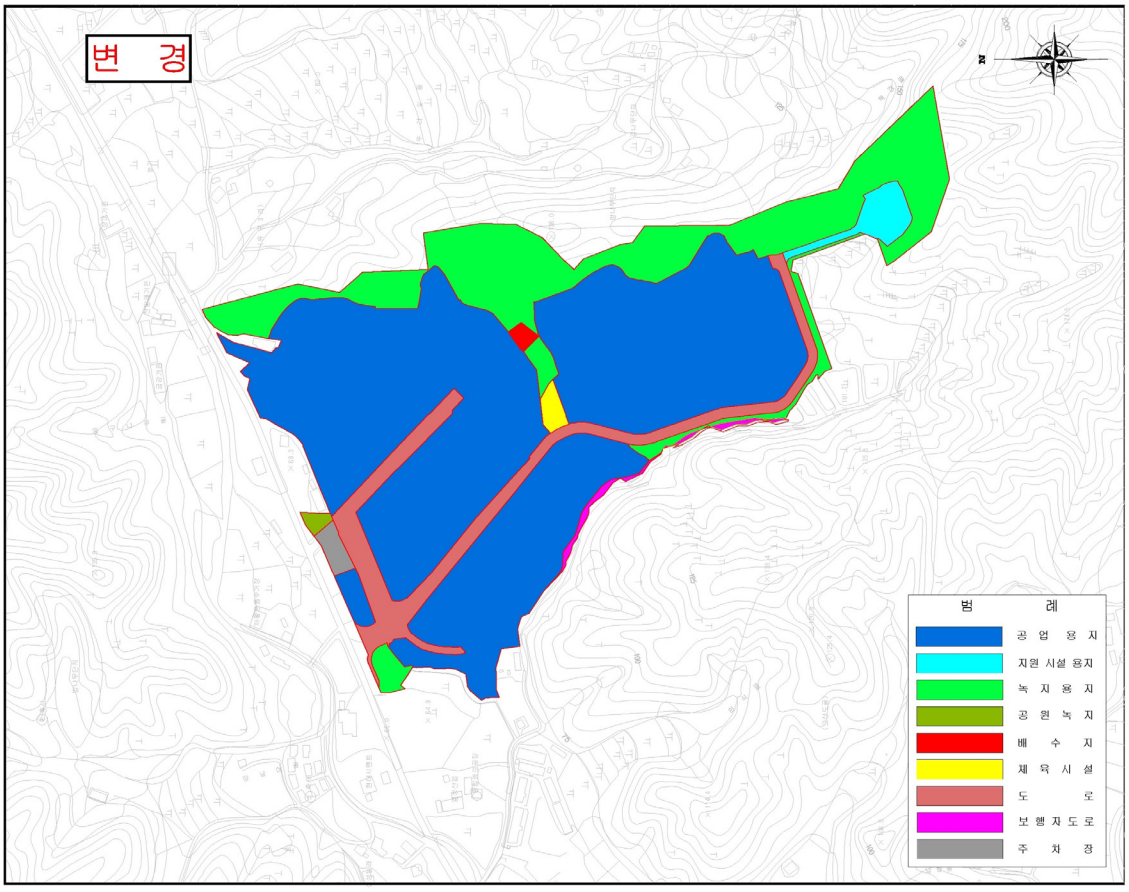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도로 (변경)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4	1,268	18,870.0	-	-	-	-	-	-	-	-	-
변경		3	1,167	18,069.2	-	-	-	-	-	-	-	-	-
기정	중로	2	1,095	17,482.0	-	-	-	2	1,095	17,482.0	-	-	-
변경		2	1,090	17,408.2	-	-	-	2	1,090	17,408.2	-	-	-
기정	소로	2	173	1,388.0	-	-	-	2	173	1,388.0	-	-	-
변경		1	77	661.0	-	-	-	1	77	661.0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24	국지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 664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변경	중로	2	1	15-24	국지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 664-3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기정	중로	2	2	12-20	국지도로	735	중로2-1	유구리 산49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변경	중로	2	2	12-20	국지도로	730	중로2-1	유구리 702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중로2-1	유구리 689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중로2-1	유구리 689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96	중로2-2	유구리 산49	진입도로	농공단지내	2009. 3.13	

2) 주차장계획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유구읍 유구리 696번지일원	1,380	감)0.1	1,379.9	2009. 3.13	확정에의한 면적변경

3) 공원·녹지계획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유구리 664-2번지	596.0	증)1.4	597.4	2009. 3.13	확정에의한 면적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유구리 699번지 일원	58,881.1	감) 5,337.1	50,544.0	2009. 3.13	확정에의한 면적변경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 고
합 계	1,259.79	
공업용수	854.00	
생활용수	405.79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유구리 661번지일원	587.90	2009. 3.13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단지내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해 유구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후 유구천으로 방류

6)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 연 성	불연성 및 지정	재 활 용	계
생활폐기물	38.0	20.1	38.9	97.0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8.4	3.8	-	12.2
계	**46.4**	**23.9**	**38.9**	**109.2**

◦ 단지내 발생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7)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 (MWh/년)	비 고
합 계	10,550.8	
산업시설용지	10,381.0	
지원지설용지	169.8	

9) 통신공급계획(변경)

구분	회선/10인. 0.2회선/10㎡		업 체 당 표준전화대수		소요대수		계획대수		비고
	공장	지원	공장	지원	공장	지원	공장	지원	
기정	70		10×10=100		170		221		
증설	17	17	5×5=25	5×5=25	42	42	55	55	

◦ 단지내 통신시설 수요는 KT 공주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 단지내 통신수요는 331회선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 유구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정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일원

변경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227,960.9㎡

변경 - 227,961.3㎡ (증 0.4㎡)

※ 확정측량 오차 수정에 따른 면적변경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공주시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 사업 시행자 : 웅진코웨이(주), 웅진식품(주)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1년 12월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 유구농공단지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유구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도시관리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227,960.9	증) 0.4	227,961.3	10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227,960.9	1989.1.26	
변 경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227,961.3	1989.1.26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02-02-01	유구 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번지외 33필지	227,960.9	증)0.4	227,961.3	1989.1.26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24	국지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664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변경	중로	2	1	15-24	국지도로	360	지방도604호	유구리664-3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기정	중로	2	2	12-20	국지도로	735	중로2-1	유구리산49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변경	중로	2	2	12-20	국지도로	735	중로2-1	유구리702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중로2-1	유구리689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중로2-1	유구리689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96	중로2-2	유구리산49	진입도로	농공단지	2009. 3.13	

■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 연장 신설 시점 : 지방도604호→ 664-3번지 B : 15-24m L : 360m A : 8,098.0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중로2-2	중로2-2	• 연장 변경 시점 : 중로2-1→ 702번지 B : 12-20m L : 730m A : 9,310.2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소로2-1	소로2-1	• 연장 변경 시점 : 중로2-1호→ 689번지 B : 8m L : 77m A : 661.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696번지 일원	1,380.0	감)0.1	1,379.9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체육시설	운동시설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701번지 일원	1,602.0	감)453.0	1,149.0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웅진공원	소공원	유구리 664-2 번지 일원	596.0	증) 1.4	597.4	

※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마. 배수지(변경없음)

■ 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배수지	배수시설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661번지 일원	587.90	-	587.9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1 1-3 2-1 3-1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종
				24	1차 금속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25m) 이하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2	유구읍 유구리 66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종
				10	식료품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25m) 이하	

나. 지원시설

■ 기숙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4	유구읍 유구리 70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기숙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다. 공공시설용지

■ 공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3-3	유구읍 유구리 664-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관련규정에 의함
		용적률		관련규정에 의함
		높 이		관련규정에 의함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3-2	유구읍 유구리 69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2층(12m) 이하

■ 배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5	유구읍 유구리 66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배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체육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6	유구읍 유구리 70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운동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관련규정에 의함
		용적률		관련규정에 의함
		높 이		관련규정에 의함

공주시 고시 제2011 - 121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08-31호(2008.07.10.), 제2008-60호(2008.10.20.), 제2009-51호(2009.05.15.) 및 제2010-100호(2010.08.1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되어 사업추진중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의 변경이 있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다. 면 적 : 95,910.9㎡(단지조성 87,789.8㎡, 신국도32호선 8,121.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유구소도읍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 또한, 사업부지에 기존공장 및 신규공장의 입지를 추진하여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공주시장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0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당초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변경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에 한함)
  가구 제조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0,980.5	100.0	
기정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39,199.6	64.3	면적 변경없음
변경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기정	14.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142 모피 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외)	21,780.9	35.7	면적 변경없음
변경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32. 가구제조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7,789.8	100.0	
산업시설용지		60,980.5	69.5	
공공시설용지	소 계	26,809.3	30.5	
	도 로	17,986.6	20.5	중로 2개소, 소로 4개소
	완충녹지	5,977.4	6.8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231.1	0.3	공공공지 1개소
	주 차 장	2,066.2	2.3	주차장 1개소
	하 천	548.0[1)]	0.6	하천 1개소

신국도 32호선 부지	8,121.1		

주1) 도로와 하천이 일부 중복 결정된 사항으로 중복면적(141㎡)은 하천면적 산정시 제외된 사항임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1,643	17,986.6	3	505	5,704.5	-	-	-	3	1,138	12,282.1
중로	2	1,069	11,854.6	-	-	-	-	-	-	2	1,069	11,854.6
소로	4	574	6,132.0	3	505	5,704.5	-	-	-	1	69	427.5

※ 신국도32호선부지내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제외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40	소로1-3	소로3-3	일반도로		'07. 5.15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629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2 (425)	중로3-6	중로1-2	일반도로		'07. 5.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4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9	중로3-5	자카드일반산업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08.10.20	

※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백교리 619차 일원	2,066.2	-	2,066.2	'08.10.20	

나. 공간시설계획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4,057.1	-	4,057.1	'08.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소로1-3호선 동측	531.2	-	531.2	'08.10.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신국도 32호선 양측변	1,389.1	-	1,389.1	'08.10.20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백교리 628도 일원	231.1	-	231.1	'08.10.20	

다. 방재시설계획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폭(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하천	소하천	백교리 622도 일원	백교리 622도 일원	-	0.166	4.4~4.8	689	'08.10.20	도로와 중복결정 (A=141㎡)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276.2	266.1	감) 10.1	
공 업 용 수	247.5	238.9	감) 8.6	
생 활 용 수	28.7	27.2	감) 1.5	

나. 하수처리계획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오수발생량	22.78	24.3	증) 1.52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2,631	23,622	증)991	
생산시설	22,448	23,439	증)991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83	183	-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38	39	증)1	
산 업 시 설	35	36	증)1	
공 중 전 화	3	3	-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43,321	36,724	감)6,597	
생산시설	43,321	36,724	감)6,597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조서 참조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도시과 (☎041-840-855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유구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개발방법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공영개발

○ 주요업종

- 당초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변경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에 한함)
  가구 제조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나. 면적 : 95,910.9㎡(단지조성 87,789.8㎡, 신국도32호선 8,121.1㎡)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0년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1,643	17,986.6	3	505	5,704.5	-	-	-	3	1,138	12,282.1
중로	2	1,069	11,854.6	-	-	-	-	-	-	2	1,069	11,854.6
소로	4	574	6,132.0	3	505	5,704.5	-	-	-	1	69	427.5

※ 신국도32호선부지내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제외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40	소로1-3	소로3-3	일반도로		'07. 5.15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629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2 (425)	중로3-6	중로1-2	일반도로		'07. 5.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4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9	중로3-5	자카드일반산업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08.10.20	

※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백교리 619차 일원	2,066.2	-	2,066.2	'08.10.20	

2) 공간 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4,057.1	-	4,057.1	'08.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소로1-3호선 동측	531.2	-	531.2	'08.10.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신국도 32호선 양측변	1,389.1	-	1,389.1	'08.10.20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백교리 628도 일원	231.1	-	231.1	'08.10.20	

3)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폭(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하천	소하천	백교리 622도 일원	백교리 622도 일원	-	0.166	4.4~4.8	689	'08.10.20	도로와 중복결정 (A=141㎡)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95,910.9	-	95,910.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B1	B1	22,893.4	①	백교리 603장	3,714.4	-
			②	백교리 604장	2,216.8	-
			③	백교리 605장	2,546.5	-
			④	백교리 607장	4,026.8	-
			⑤	백교리 606장	3,397.7	-
			⑥	백교리 608장	3,683.2	획지분할가능 (1,841.6㎡/1,841.6㎡)
			⑦	백교리 609장	3,308.0	-
B2	B2	11,050.5	①	백교리 610장	3,666.3	획지분할가능 (1,903.9㎡/1,762.4㎡)
			②	백교리 611장	3,671.5	-
			③	백교리 612장	3,712.7	획지분할가능 (1,974.4㎡/1,738.3㎡)
B3	B3	11,754.0	①	백교리 613장	3,926.1	획지분할가능 (2,195.0㎡/1,731.1㎡)
			②	백교리 614장	3,926.8	-
			③	백교리 615장	3,901.1	획지분할가능 (1,725.6㎡/2,175.5㎡)
B4	B4	10,026.9	①	백교리 616장	3,406.7	-
			②	백교리 617장	3,311.0	-
			③	백교리 618장	3,309.2	획지분할가능 (1,650.2㎡/1,659.0㎡)
B5	B5	1,986.5	①	백교리 601장	1,986.5	-
B6	B6	3,269.2	①	백교리 602장	3,269.2	-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B7	B7	2,066.2	①	백교리 619차	2,066.2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B1~B6)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차 장 용 지 (B7)	유구읍 백교리 619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구역내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구간 (10m) 지정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6)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별 첨 >

- 토 지 조 서 -

■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총계	총 50필지			96,754.8	95,910.9			
1	유구읍 백교리	601	장	1,986.5	1,986.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	유구읍 백교리	602	장	3,269.2	3,269.2	㈜에스엠인터내셔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6 도현빌딩 1층	단지내 (분양)
3	유구읍 백교리	603	장	3,714.4	3,714.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4	유구읍 백교리	604	장	2,216.8	2,216.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5	유구읍 백교리	605	장	2,546.5	2,546.5	남택욱	대전 유성구 신성동 160-1 한울아파트 108-903	단지내 (분양)
6	유구읍 백교리	606	장	3,397.7	3,397.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7	유구읍 백교리	607	장	4,026.8	4,026.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8	유구읍 백교리	608	장	3,683.2	3,683.2	㈜크리실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비01호	단지내 (분양)
9	유구읍 백교리	609	장	3,308.0	3,308.0	㈜크리실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비01호	단지내 (분양)
10	유구읍 백교리	610	장	3,666.3	3,666.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1	유구읍 백교리	611	장	3,671.5	3,671.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2	유구읍 백교리	612	장	3,712.7	3,712.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3	유구읍 백교리	613	장	3,926.1	3,926.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4	유구읍 백교리	614	장	3,926.8	3,926.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5	유구읍 백교리	615	장	3,901.1	3,901.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6	유구읍 백교리	616	장	3,406.7	3,406.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7	유구읍 백교리	617	장	3,311.0	3,311.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8	유구읍 백교리	618	장	3,309.2	3,309.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19	유구읍 백교리	619	차	2,066.2	2,066.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0	유구읍 백교리	620	공	2,487.9	2,487.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1	유구읍 백교리	621	도	91.0	91.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2	유구읍 백교리	622	도	8,265.4	8,265.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3	유구읍 백교리	623	구	548.0	548.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4	유구읍 백교리	624	도	131.0	131.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5	유구읍 백교리	625	공	645.2	645.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6	유구읍 백교리	626	공	743.9	743.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7	유구읍 백교리	627	공	593.4	593.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8	유구읍 백교리	628	도	231.1	231.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29	유구읍 백교리	629	공	975.8	975.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0	유구읍 백교리	630	도	9,220.6	9,220.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31	유구읍 백교리	631	장	9.6	9.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32	유구읍 백교리	632	공	531.2	53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33	유구읍 백교리	633	도	202.0	202.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34	유구읍 백교리	634	도	67.0	67.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단지내
35	유구읍 백교리	171-1	답	567	112.8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36	유구읍 백교리	172-1	답	935	808.2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37	유구읍 백교리	184-1	답	1,007	1,007.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38	유구읍 백교리	185-3	답	1,154	1,154.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39	유구읍 백교리	186-1	답	435	435.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0	유구읍 백교리	187-3	답	524	524.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1	유구읍 백교리	187-4	답	612	612.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2	유구읍 백교리	188-1	답	338	338.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3	유구읍 백교리	212-1	답	365	365.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4	유구읍 백교리	213-3	답	797	676.8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5	유구읍 백교리	214-4	천	377	234.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6	유구읍 백교리	219-1	전	380	380.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7	유구읍 백교리	220-1	답	1,180	1,180.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8	유구읍 백교리	571-10	구	108	108.0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49	유구읍 백교리	577-1	도	94	94.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50	유구읍 백교리	578-1	도	92	92.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신국도32호선

※ 신국도 32호선 부지는 금회 확정측량시 제외된 부지로 구적면적으로 산출한 사항임

◉ 공주시 고시 제2011 - 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우리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화장장)부지내「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화장장)
- 명 칭 : 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246,100	- 추모공원조성사업 1식 ▪ 장사시설 : 13,627㎡ ▪ 도로및광장: 12,944㎡ ▪ 기 타 : 219,529㎡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10. 10. 15 ~ 2012. 12. 30(기존 : 2011.12.30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 주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관리의 명세	비 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계					250,471	246,100				
1	운암리	169		임야	109	109	공주시			
2	운암리	170		임야	734	734	공주시			
3	운암리	171		임야	1,785	1,785	공주시			
4	운암리	172		전	912	912	공주시			
5	운암리	173		전	301	301	공주시			
6	운암리	174		전	2,747	2,747	공주시			
7	운암리	174	1	임야	7,450	7,450	공주시			
8	운암리	175		답	1,405	1,405	공주시			
9	운암리	176		임야	668	668	공주시			
10	운암리	177		답	241	241	공주시			
11	운암리	178		답	962	962	공주시			
12	운암리	179		임야	413	413	공주시			
13	운암리	180		임야	1,845	1,845	공주시			
14	운암리	181		임야	1,150	1,150	공주시			
15	운암리	181	1	전	288	288	공주시			
16	운암리	220		전	271	271	공주시			
17	운암리	221		전	63	63	공주시			
18	운암리	222		전	3,117	3,117	공주시			
19	운암리	223		전	850	850	공주시			
20	운암리	224		전	833	833	공주시			
21	운암리	225		전	2,136	2,136	공유자지분1/2 공주시			
							공유자지분1/2 대평무길	논산군 연산면 백석리149번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관리의 명세	비 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22	운암리	226	1	전	552	552	공주시			
23	운암리	226	2	답	291	291	공주시			
24	운암리	227		전	281	281	공주시			
25	운암리	228		전	1,111	1,111	공주시			
26	운암리	229	1	전	2,114	2,114	공주시			
27	운암리	229	2	전	2,093	2,093	공주시			
28	운암리	229	4	전	48	48	공주시			
29	운암리	421		구거	10,699	6,328	국 (농림수산부)			
30	운암리	산15	5	임야	21,216	21,216	공주시			
31	운암리	산15	6	임야	18,612	18,612	공주시			
32	운암리	산15	7	임야	94,563	94,563	공주시			
33	운암리	산16		임야	992	992	공주시			
34	운암리	산17		임야	5,950	5,950	공주시			
35	운암리	산18	3	임야	63,669	63,669	공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서

사업시행지의 위치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명 칭	공주시추모공원 조성사업	
인 가 내 용	사 업 규 모		소요사업비
	▪ 부지면적 : 246,100㎡ ▪ 추모공원 조성사업 1식 -장 사 시 설: 13,627㎡ -도로및광장 : 12,944㎡ -기 타 : 219,529㎡		
사 업 시 행 자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성 명	공주시장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2010. 01. 15 ~ 2012.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합니다.

2012. 1. 02

공 주 시 장

인 가 조 건

1. 금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사항은 단순기간연장(2012. 12.30까지)하는 것으로, 공주시 고시 제2010-8호(2010. 01.15)로 인가조건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011. 12.30일까지 만료되므로 산림과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2. 13.30일까지 연장하여야 함[산림과-6151(2011.12.16)호와 관련됨]

3.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신청서,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서, 검사조서 및 **감리보고서 를** 첨부하여 완료보고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공주시 고시 제2011 - 124호

도시관리계획(학교:공주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주대: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

공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대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21	학교	대학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계	356,337	-	356,337	1966.5.31	조성계획 변경
					자연녹지	356,337	-	356,337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교육시설	○ **신축건물** - 대학본부 : 9,190㎡ - 재활용분류장 : 180㎡	○ 대학본부 신축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 **용도추가** - 웅비학생회관 →1F:제1종 근린생활시설 추가 →2F:행정실 추가	○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추가
		○ **기타 : 명칭변경 등**	○ 기타 건축물의 명칭 및 경미한 용도 변경 반영

2. 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	-	신관동 181-1 일원	356,337	-	356,337	'66.5.31	
교육시설	-	대학본부 학생생활관 등	-	173,266	-2,432	170,834		
운동시설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	31,769	-	31,769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등	-	54,043	2,862	56,905		
녹지시설	-	녹지 등	-	97,259	-430	96,829		

나. 토지이용계획

시설명	위 치	시설결정면적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공주대학교	공주시 신관동 182외 36필지	356,337	건축시설용지	173,266	-2,432	170,834	48.62	47.94	
			운동시설용지	31,769	-	31,769	8.92	8.92	
			도로및주차장	54,043	2,862	56,905	15.17	15.97	
			녹 지 용 지	97,259	-430	96,829	27.29	27.17	
			합 계	356,337	0	356,337	100.00	100.00	

다. 시설물 배치계획

(단위 : ㎡)

기정	변경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①	①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2(1)	2(1)	174.77	0	174.77	286.31	0	286.31
		은행사 (여학생생활관)	은행사 (여학생생활관)	4	4	969.48	0	969.48	3,856.32	0	3,856.32
		생활관창고	생활관창고	1	1	128.00	0	128.00	128.00	0	128.00
		대학본부	대학본부	5(1)	5(1)	884.50	0	884.50	4,270.50	0	4,270.50
		제1과학교육관	제1과학교육관	3(1)	3(1)	834.00	0	834.00	2,514.80	0	2,514.80
		홍익사 (남학생생활관)	홍익사 (남학생생활관)	3	3	1,122.06	0	1,122.06	3,343.50	0	3,343.50
		생활관식당	생활관식당	1(1)	1(1)	907.50	0	907.50	1,834.00	0	1,834.00
		제2과학교육관	제2과학교육관	6(1)	6(1)	953.52	0	953.52	5,034.07	0	5,034.07
		특수문헌정보관	특수문헌정보관	4(1)	4(1)	1,239.64	0	1,239.64	5,190.63	0	5,190.63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	1	53.06	0	53.06	53.06	0	53.06
		목 공 실	목 공 실	1	1	155.52	0	155.52	155.52	0	155.52
		문 서 실	문 서 실	1	1	151.20	0	151.20	151.20	0	151.20
		해오름집 (여학생생활관)	해오름집 (여학생생활관)	5(2)	5(2)	1,178.51	-0.3	1,178.21	5,582.95	0	5,582.95
		자연과학관	자연과학관	4(1)	4(1)	2,716.06	0	2,716.06	11,190.83	0	11,190.83
		방사능계측실	방사능계측실	1	1	533.44	0	533.44	533.44	0	533.44
		유 리 온 실	유 리 온 실	1	1	163.80	0	163.80	163.80	0	163.80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1	1	57.60	0	57.60	57.60	0	57.60
		-	신축대학본부	-	10(1)	-	1,700	1,700	-	9,190	9,190
		계				12,222.66	1,699.7	13,922.36	44,346.53	9,190	53,536.53
②	②	본부창고	본부창고	1	1	191.50	0	191.50	191.50	0	191.50
		생활미술관	생활미술관	5	5	1,500.00	0	1,500.00	6,000.00	0	6,000.00
		제1학생회관	학생복지관	3	3	996.20	0	996.20	2,328.20	0	2,328.20
		학 군 단	학 군 단	2(1)	2(1)	452.90	0	452.90	933.80	0	933.80
		변 전 실	변 전 실	2	2	338.00	0	338.00	465.40	0	465.40
		산학연구관	산학연구관	5(1)	5(1)	1,741.33	0	1,741.33	8,369.16	0	8,369.16
		제2학생회관	글로벌인재관	3(1)	3(1)	702.00	0	702.00	1,770.48	0	1,770.48
		공 장 동	공 장 동	1	1	396.00	0	396.00	396.00	0	396.00
		제1공학관	영상보건관	5(1)	5(1)	3,205.26	0	3,205.26	17,387.73	0	17,387.73
		조류사육장	조류사육장	1	1	185.76	0	185.76	185.76	0	185.76
		테니스장관리동	테니스장관리동	1	1	71.04	0	71.04	71.04	0	71.04
		제2공학관	사범6호관	8(1)	8(1)	873.00	0	873.00	6,433.89	0	6,433.89
		연결복도	연결복도	2	2	49.95	0	49.95	49.95	0	49.95
		자동차실습동	자동차실습동	1	1	300.00	0	300.00	300.00	0	300.00
		실습동화장실	실습동화장실	1	1	13.50	0	13.50	13.50	0	13.50
		조소실기실	조소실기실	1	1	99.00	0	99.00	99.00	0	99.00
		학군단창고	학군단창고	1	1	34.56	0	34.56	34.56	0	34.56
		학생복지관	국제교육원	5	5	823.07	0	823.07	3,994.00	0	3,994.00
		BTL학생생활관	드림하우스	16(1)	16(1)	1,698.82	0	1,698.82	19,226.05	0	19,226.05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4(1)	4(1)	1,800.00	0	1,800.00	7,200.00	0	7,200.00
		-	재활용품 분류장	-	1	0	180	180	-	180	180
		계				15,471.89	180	15,651.89	75,450.02	180	75,630.02

(단위 : ㎡)

기정	변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③	③	종합복지관	입학취업관	3	3	948.40	0	948.40	2,844.20	0	2,844.20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6(1)	6(1)	1,695.81	0	1,695.81	9,319.08	0	9,319.08
		박 물 관	박 물 관	2	2	513.47	0	513.47	1,026.94	0	1,026.94
		교 양 관	교양관(철거)	4(1)	4(1)	1,457.20	-1,457.20	0	5,847.08	-5,847.08	0
		헌혈의집	헌혈의집	2	2	180.97	0	180.97	248.00	0	248.00
		백제교육문화관	백제교육문화관	4(1)	4(1)	2,395.01	0	2,395.01	6,237.03	0	6,237.03
		학생회관	웅비학생회관	5(1)	5(1)	2,101.32	0	2,101.32	6,048.73	0	6,048.73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3(1)	3(1)	1,200.00	0	1,200.00	4,000.00	0	4,000.00
		계				10,492.18	-1,457.2	9,034.98	35,571.06	-5,847.08	29,723.98
④	④	체 육 관	체 육 관	2	2	1,194.70	0	1,194.70	1,800.30	0	1,800.30
		자료도서관	자료도서관	4	4	992.25	0	992.25	3,948.75	0	3,948.75
		사범교육관	사범교육관	4	4	787.50	0	787.50	2,887.50	0	2,887.50
		외국어상업정보관	외국어상업정보관	3	3	630.05	0	630.05	1,890.15	0	1,890.15
		운동장본부석	운동장본부석	1	1	117.00	0	117.00	117.00	0	117.00
		교육정보관	교육정보관	4(1)	4(1)	466.64	0.22	466.86	1,730.64	0	1,730.64
		무용실습동	무용실습동	2	2	421.20	0	421.20	752.40	0	752.40
		기구보관실	기구보관실	1	1	72.00	0	72.00	72.00	0	72.00
		계				4,681.34	0.22	4,681.56	13,198.74	0	13,198.74
⑤	⑤	음 악 관	음 악 관	3	3	1,083.47	0	1,083.47	2,236.61	0	2,236.61
		무 용 관	무 용 관	3	3	442.40	0	442.40	1,027.60	0	1,027.60
		사범대창고	사범대창고	1	1	122.40	0	122.40	122.40	0	122.40
		인문사회관	인문사회관	5(1)	5(1)	2,422.64	0	2,422.64	11,096.87	0	11,096.87
		인사대차고	인사대차고	1	1	137.78	0	137.78	137.78	0	137.78
		계				4,208.69	0	4,208.69	14,621.26	0	14,621.26
⑥	⑥	한 림 사 (교수아파트)	한 림 사 (교수아파트)	2(1)	2(1)	260.10	0	260.10	520.20	0	520.20
		인사대수위실	인사대수위실	1	1	50.76	0	50.76	50.76	0	50.76
		비전하우스 (A동)	비전하우스 (A동)	18(1)	18(1)	430.53	0	430.53	8,415.34	0	8,415.34
		비전하우스 (B동)	비전하우스 (B동)	9	9	185.95	0	185.95	1,369.21	0	1,369.21
		기숙사증축	기숙사증축	10(1)	10(1)	2,000.00	0	2,000.00	18,000.00	0	18,000.00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5(1)	5(1)	2,000.00	0	2,000.00	10,000.00	0	10,000.00
		계				4,927.34	0	4,927.34	38,355.51	0	38,355.51
⑦	⑦	공주국민 체육센타	공주국민 체육센타	2(1)	2(1)	1,182.16	0	1,182.16	2,005.67	0	2,005.67
		체육관증축	체육관증축	3(1)	3(1)	1,800.00	0	1,800.00	5,400.00	0	5,400.00
		예 술 관	예 술 관	8(1)	8(1)	2,000.00	0	2,000.00	15,000.00	0	15,000.00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	4(1)	4(1)	1,800.00	0	1,800.00	7,200.00	0	7,200.00
		계				6,782.16	0	6,782.16	29,605.67	0	29,605.67
		합 계				58,786.26	422.72	59,208.98	251,148.79	3,522.92	254,671.71

건폐율	기 정	58,786.26 / 356,337*100 = 16.50%
	변 경	59,208.98 / 356,337*100 = 16.62%
용적률	기 정	(251,148.79-19,506.61) / 356,337*100 = 65.01%
	변 경	(254,671.71-19,695.31) / 356,337*100 = 65.94%

라. 세부 건축시설 계획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입학취업관 (종합복지관)	1F	948.40	948.40	행정실, 강의실, 우체국
		2F	947.90	947.90	강의실
		3F	947.90	947.90	행정실, 강의실
		소 계	2,844.20	2,844.20	
	게스트하우스	지하1F	18.36	18.36	기계실
		1F	174.77	174.77	생활관
		2F	93.18	93.18	〃
		소 계	286.31	286.31	
	본부창고	1F	191.50	191.50	창고
	중앙도서관	지하1F	1,026.36	1,026.36	기계실, 변전실, 서고
		1F	1,452.01	1,452.01	도서관
		2F	1,052.51	1,052.51	〃
		3F	1,695.81	1,695.81	〃
		4F	1,456.79	1,456.79	〃
		5F	1,317.80	1,317.80	〃
		6F	1,317.80	1,317.80	〃
		소 계	9,319.08	9,319.08	
	박물관	1F	513.47	513.47	행정실, 박물관
		2F	513.47	513.47	박물관
		소 계	1,026.94	1,026.94	
	체육관	1F	1,194.70	1,194.70	체육관, 행정실
		2F	605.60	605.60	체육관, 연구실
		소 계	1,800.30	1,800.30	
	백제교육문화관	지하1F	873.38	873.38	기계실, 변전실
		1F	2,105.05	2,105.05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2F	1,232.16	1,232.16	강의실, 국제회의실
		3F	1,446.46	1,446.46	강의실, 행정실
		4F	579.98	579.98	강의실, 교수학습센터
		소 계	6,237.03	6,237.03	
	교양관 ('16년 철거예정)	지하1F	391.30	0	기계실, 변전실
		1F	1,457.20	0	강의실, 실험실
		2F	1,453.30	0	〃
		3F	1,453.30	0	〃
		4F	1,091.98	0	〃
		소 계	5,847.08	0	
	자료도서관	1F	972.00	972.00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도서관, 행정실
		2F	992.25	992.25	도서관
		3F	992.25	992.25	〃
		4F	992.25	992.25	〃
		소 계	3,948.75	3,948.75	
	생활미술관	1F	958.65	958.65	강의실, 실험실
		2F	938.40	938.40	〃
		3F	938.40	938.40	〃
		4F	137.15	137.15	〃
		소 계	2,972.60	2,972.6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학생복지관 (제1학생회관)	1F	996.20	996.20	식당
		2F	666.00	666.00	동아리실
		3F	666.00	666.00	〃
		소 계	2,328.20	2,328.20	
	사범교육관	1F	787.50	787.50	강의실, 행정실
		2F	775.00	775.00	강의실
		3F	775.00	775.00	〃
		4F	550.00	550.00	〃
		소 계	2,887.50	2,887.50	
	생활관 창고	1F	128.00	128.00	창고
	은행사 (여학생생활관)	1F	969.48	969.48	기숙사, 행정실
		2F	962.28	962.28	기숙사
		3F	962.28	962.28	〃
		4F	962.28	962.28	〃
		소계	3,856.32	3,856.32	
	대학본부	지하1F	364.00	364.00	기계실, 변전실
		1F	884.50	884.50	행정실
		2F	842.50	842.50	〃
		3F	842.50	842.50	〃
		4F	668.50	668.50	연구실
		5F	668.50	668.50	연구실
		소 계	4,270.50	4,270.50	
	음악관	1F	1,083.47	1,083.47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694.52	694.52	강의실습실
		3F	458.62	458.62	〃
		소 계	2,236.61	2,236.61	
	무용관	1F	442.40	442.40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442.40	442.40	강의실습실
		3F	142.80	142.80	〃
		소 계	1,027.60	1,027.60	
	학군단	지하1F	46.20	46.20	학군단
		1F	452.90	452.90	〃
		2F	434.70	434.70	〃
		소 계	933.80	933.80	
	외국어상업 정보관	1F	630.05	630.05	연구실, 강의실
		2F	630.05	630.05	〃
		3F	630.05	630.05	〃
		소 계	1,890.15	1,890.15	
	운동장본부석	1F	117.00	117.00	운동기구 창고
	제1과학교육관	지하1F	60.80	60.80	기계실, 변전실
		1F	834.00	834.00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810.00	810.00	강의실습실
		3F	810.00	810.00	〃
		소 계	2,514.80	2,514.80	
	변전실	1F	338.00	338.00	변전실
		2F	127.40	127.40	〃
		소 계	465.40	465.4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홍익사 (남학생생활관)	1F	1,122.06	1,122.06	기숙사
		2F	1,110.72	1,110.72	〃
		3F	1,110.72	1,110.72	〃
		소 계	3,343.50	3,343.50	
	생활관식당	지하1F	926.50	926.50	기계실
		1F	907.50	907.50	식당
		소 계	1,834.00	1,834.00	
	산학연구관	지하1F	1,562.94	1,562.94	기계실, 변전실
		1F	1,741.33	1,741.33	산학연구실
		2F	1,311.62	1,311.62	〃
		3F	1,445.49	1,445.49	〃
		4F	1,463.31	1,463.31	〃
		5F	844.47	844.47	〃
		소 계	8,369.16	8,369.16	
	제2과학교육관	지하1F	247.76	247.76	기계실, 전기실
		1F	953.52	953.52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923.52	923.52	행정실, 강의실습실
		3F	923.52	923.52	강의실습실, 연구실
		4F	923.52	923.52	〃
		5F	923.52	923.52	〃
		6F	138.71	138.71	〃
		소 계	5,034.07	5,034.07	
	글로벌인재관 (제2학생회관)	지하1F	288.00	288.00	기계실
		1F	702.00	702.00	행정실
		2F	540.00	540.00	고시원
		3F	240.48	240.48	학생회실
		소 계	1,770.48	1,770.48	
	특수문헌정보관	지하1F	316.07	316.07	강의실, 기계실
		1F	1,239.64	1,239.64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2F	1,211.64	1,211.64	연구실, 강의실
		3F	1,211.64	1,211.64	〃
		4F	1,211.64	1,211.64	〃
		소계	5,190.63	5,190.63	
	정문수위실	1F	53.06	53.06	수위실
	목공실	1F	155.52	155.52	목공실
	공장동	1F	396.00	396.00	강의실습실
	사범대창고	1F	122.40	122.40	창고
	문서실	1F	151.20	151.20	문서실
	해오름집 (여학생생활관)	지하2F	557.93	557.93	기계실, 기숙사
		지하1F	623.57	623.57	기숙사
		1F	1,047.35	1,047.35	행정실, 기숙사
		2F	1,119.45	1,119.45	기숙사
		3F	1,119.45	1,119.45	〃
		4F	601.34	601.34	〃
		5F	513.86	513.86	〃
		소 계	5,582.95	5,582.95	
	방사능계측실	1F	533.44	533.44	실험실습실
	유리온실	1F	163.80	163.8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자연과학관	지하1F	802.89	802.89	기계실, 강의실
		1F	2,415.93	2,415.93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2F	2,539.89	2,539.89	연구실, 강의실
		3F	2,716.06	2,716.06	〃
		4F	2,716.06	2,716.06	〃
		소 계	11,190.83	11,190.83	
	영상보건관 (공학1호관)	지하1F	1,587.15	1,587.15	기계실, 강의실
		1F	2,979.54	2,979.54	연구실, 강의실
		2F	3,205.26	3,205.26	〃
		3F	3,205.26	3,205.26	〃
		4F	3,205.26	3,205.26	〃
		5F	3,205.26	3,205.26	〃
		소 계	17,387.73	17,387.73	
	교육정보관	지하1F	23.40	23.40	창고
		1F	416.16	416.16	연구실, 강의실
		2F	466.86	466.86	〃
		3F	412.11	412.11	〃
		4F	412.11	412.11	〃
		소 계	1,730.64	1,730.64	
	무용실습동	1F	331.20	331.20	강의실습실
		2F	421.20	421.20	〃
		소 계	752.40	752.40	
	인문사회관	지하1F	1,518.00	1,518.00	기계실, 학회실
		1F	2,422.64	2,422.64	행정실, 강의실
		2F	2,306.74	2,306.74	연구실, 강의실
		3F	1,823.94	1,823.94	〃
		4F	1,831.55	1,831.55	〃
		5F	1,194.00	1,194.00	〃
		소 계	11,096.87	11,096.87	
	한림사 (교수아파트)	지하1F	27.00	27.00	기계실
		1F	260.10	260.10	기숙사
		2F	233.10	233.10	기숙사
		소 계	520.20	520.20	
	조류사육장	1F	185.76	185.76	실험실습실
	테니스장 관리동	1F	71.04	71.04	관리실
	인사대 수위실	1F	50.76	50.76	수위실
	인사대 차고	1F	137.78	137.78	차고
	사범6호관 (제2공학관)	지하1F	186.66	186.66	기계실
		1F	504.99	504.99	연구실, 강의실
		2F	873.00	873.00	〃
		3F	873.00	873.00	〃
		4F	873.00	873.00	〃
		5F	873.00	873.00	〃
		6F	873.00	873.00	〃
		7F	873.00	873.00	〃
		8F	504.24	504.24	〃
		소 계	6,433.89	6,433.89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연결복도	2F	49.95	49.95	복도
	자동차 실습동	1F	300.00	300.00	실험실습실
	실습동 화장실	1F	13.50	13.50	화장실, 샤워실
	공주국민체육센터	지하1F	357.73	357.73	기계실, 강의실
		1F	1,182.16	1,182.16	행정실, 수영장
		2F	465.78	465.78	헬스장, 강의실
		소 계	2,005.67	2,005.67	
	조소실기실	1F	99.00	99.00	강의실습실
	학군단 창고	1F	34.56	34.56	창고
	비전하우스(A동)	지하1F	1,675.31	1,675.31	기계실, 식당
		1F	331.64	331.64	행정실, 도서실, 헬스장
		2F	388.67	388.67	기숙사
		3F	388.67	388.67	〃
		4F	388.67	388.67	〃
		5F	388.67	388.67	〃
		6F	388.67	388.67	〃
		7F	388.67	388.67	〃
		8F	388.67	388.67	〃
		9F	388.67	388.67	〃
		10F	388.67	388.67	〃
		11F	388.67	388.67	〃
		12F	388.67	388.67	〃
		13F	388.67	388.67	〃
		14F	388.67	388.67	〃
		15F	388.67	388.67	〃
		16F	312.11	312.11	〃
		17F	312.11	312.11	〃
		18F	342.79	342.79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소 계	8,415.34	8,415.34	
	비전하우스(B동)	1F	149.37	149.37	행정실
		2F	152.48	152.48	기숙사
		3F	152.48	152.48	〃
		4F	152.48	152.48	〃
		5F	152.48	152.48	〃
		6F	152.48	152.48	〃
		7F	152.48	152.48	〃
		8F	152.48	152.48	〃
		9F	152.48	152.48	〃
		소 계	1,369.21	1,369.21	
	헌혈의집	1F	116.91	116.91	체혈실
		2F	131.09	131.09	행정실
		소 계	248	248	
	국제교육원 (학생복지관)	1F	348.61	348.61	은행
		2F	662.37	662.37	행정실, 강의실습실
		소 계	1,010.98	1,010.98	
	기구보관실	1F	72.00	72.00	기구보관실
	위험물저장소	1F	57.60	57.6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기존건물	드림하우스 (BTL학생생활관)	지하1F	1,722.74	1,722.74	행정실, 기계실, 전기실
		1F	1,361.25	1,361.25	구내식당
		2F	1,568.61	1,568.61	기숙사
		3F	1,539.03	1,539.03	〃
		4F	1,526.22	1,526.22	〃
		5F	1,526.22	1,526.22	〃
		6F	1,526.22	1,526.22	〃
		7F	1,539.03	1,539.03	〃
		8F	1,539.03	1,539.03	〃
		9F	1,526.22	1,526.22	〃
		10F	543.53	543.53	〃
		11F	543.53	543.53	〃
		12F	543.53	543.53	〃
		13F	556.34	556.34	〃
		14F	554.85	554.85	〃
		15F	554.85	554.85	〃
		16F	554.85	554.85	〃
		소 계	19,226.05	19,226.05	
	웅비학생회관 (학생회관)	지하1F	352.56	352.56	기계실, 전기실
		1F	1,823.31	1,823.31	행정실, 매점, 보건진료소 동아리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2F	1,348.87	1,348.87	판매시설, 행정실
		3F	1,203.98	1,203.98	동아리실
		4F	864.50	864.50	동아리실
		5F	455.51	455.51	동아리실, 신문방송국
		소 계	6,048.73	6,048.73	
	계		178,338.37	172,491.29	
신축건물	신축대학본부	지하1F		580	기계실, 전기실
		1F		1450	행정실, 국제회의실
		2F		1160	행정실, 학생써비스센터
		3F		540	행정실, 대회의실
		4F		780	〃
		5F		780	〃
		6F		780	〃
		7F		780	〃
		8F		780	〃
		9F		780	〃
		10F		780	〃
		소 계		9,190	
	재활용품분류장	1F		180	재활용품 분류장
	계			9,37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계획건물	기숙사 증축	지하1F	700.00	700.00	기계실, 전기실
		1F	2,000.00	2,000.00	행정실, 도서실
		2F	1,700.00	1,700.00	기숙사
		3F	1,700.00	1,700.00	〃
		4F	1,700.00	1,700.00	〃
		5F	1,700.00	1,700.00	〃
		6F	1,700.00	1,700.00	〃
		7F	1,700.00	1,700.00	〃
		8F	1,700.00	1,700.00	〃
		9F	1,700.00	1,700.00	〃
		10F	1,700.00	1,700.00	〃
		소 계	18,000.00	18,000.00	
	체육관 증축	지하1F	600.00	600.00	기계실, 전기실
		1F	1,800.00	1,800.00	행정실, 체육관
		2F	1,500.00	1,500.00	연구실, 관람석
		3F	1,500.00	1,500.00	연구실, 관람석
		소 계	5,400.00	5,400.00	
	예술관	지하1F	750.00	750.00	기계실, 전기실
		1F	2,000.00	2,000.00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1,750.00	1,750.00	강의실습실
		3F	1,750.00	1,750.00	〃
		4F	1,750.00	1,750.00	〃
		5F	1,750.00	1,750.00	〃
		6F	1,750.00	1,750.00	〃
		7F	1,750.00	1,750.00	〃
		8F	1,750.00	1,750.00	〃
		소 계	15,000.00	15,000.00	
	언어교육원	지하1F	450.00	450.00	기계실, 전기실
		1F	1,800.00	1,800.00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1,650.00	1,650.00	연구실, 강의실습실
		3F	1,650.00	1,650.00	〃
		4F	1,650.00	1,650.00	〃
		소 계	7,200.00	7,200.00	
	국제교육원 증축	3F	994.00	994.00	강의실습실
		4F	994.00	994.00	〃
		5F	995.02	995.02	〃
		소 계	2,983.02	2,983.02	
	생활미술관 증축	1F	541.40	541.40	연구실, 강의실습실
		2F-4F	1,623.00	1,623.00	〃
		5F	863.00	863.00	〃
		소계	3,027.40	3,027.40	

구 분	명 칭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정	변 경	
계획건물	정보전산원	지하1F	400.00	400.00	기계실, 전기실
		1F	1,200.00	1,200.00	전산실
		2F	1,200.00	1,200.00	〃
		3F	1,200.00	1,200.00	〃
		소 계	4,000.00	4,000.00	
	미래교육관	지하1F	600.00	600.00	기계실, 전기실
		1F	2,000.00	2,000.00	연구실, 강의실
		2F	1,850.00	1,850.00	〃
		3F	1,850.00	1,850.00	〃
		4F	1,850.00	1,850.00	〃
		5F	1,850.00	1,850.00	〃
		소 계	10,000.00	10,000.00	
	창업보육센터	지하1F	450.00	450.00	기계실, 전기실
		1F	1,800.00	1,800.00	행정실, 연구실
		2F	1,650.00	1,650.00	연구실, 실험실
		3F	1,650.00	1,650.00	〃
		4F	1,650.00	1,650.00	〃
		소 계	7,200.00	7,200.00	
	계		72,810.42	72,810.42	
합 계		연 면 적	251,148.79	254,671.71	
		지하면적	19,506.61	19,695.31	
		용적율적용	231,642.18	234,976.40	

마. 토지조서

(단위 : ㎡)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소유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학교	354,253	354,253	-	354,253	교육부	
2	충남 공주시 신관동 545	구거	736	736	-	736	농림부	
3	〃 564-3	〃	275	275	-	275	〃	
4	〃 177-10	〃	25	25	-	25	공주시	
5	〃 166-1	대	329	329	-	329	홍남순	
6	〃 167-1	〃	4	4	-	4	〃	
7	〃 242-1	전	233	233	-	233	이영수	
8	〃 산9-86	임야	2,082	482	-	482	유근환	
	합 계		357,937	356,337	-	356,337		

3. 세부조성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주시 고시 제2011 - 1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햇님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254번지 외 3필지(254-3, 214, 255)

3. 사업주체

○ 당 초
- 상 호 : (주)다몬주택건설
- 대 표 : 강명선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532-9

○ 변 경
- 상 호 : 주식회사 천웅건설
- 대 표 : 박행천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29 운암키즈몰 702호

4. 용도지역 : 관리지역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분양구분	기존	일반공급	○ 연 면 적	기존	7,071.793㎡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축면적	기존	1,551.0837㎡	○ 대지면적	기존	7,054.0㎡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 폐 율	기존	21.98%	○ 용 적 율	기존	99.48%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설규모	기존	아파트 3동 및 부대시설	○ 세 대 수	기존	70세대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사업기간	기존	2000.04. - 2009.03.31			
	변경	2000.04. - 2012.02.28			
○ 사 업 비	기존	6,318,000천원	○ 비 고		
	변경	변경없음			

6.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공주시 고시 제2011 - 12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1/5,000) : 게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과 041-840-854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②	체육시설	골프장	의당면 청룡리 221-2	152,438	증) 23,326	175,764	'08.10.20 (공주시 제2008-67호)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체육시설	■ 체육시설(골프장) 변경 -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21-1 - 면적 : 152,438→175,764㎡(증23,326) - 내용 : 6홀→9홀(대중)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골프 코스를 증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환경기초시 설	폐기물처 리 시 설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	178,000	178,000	-	-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②	환경기초시설	신설 : 178,000㎡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로 재활용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족한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11 - 1120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최근에 개정된 「국민제안 규정」, 「공무원제안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2. 주요내용

○ **제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의1)**

- 제안의 자격요건을 시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정에 관심있는 자로 확대(시민 ⇒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안제도 효율성를 위해서 제안내용의 관련 담당관·과·팀·직속기관·사업소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실무위원회 신설)

○ **제안 활성화를 위한 기관·부서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안의 채택·실시 또는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포상(기관·부서 등 포상규정 신설)

○ **퇴직 및 사망에 따른 상여금 상속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안 채택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하는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상여금 상속규정 신설)

○ **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운영 지원(제안 T/F팀 구성 규정 신설)

○ **제안자의 실시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제안의 실시부터 정책 완료시까지 제안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제안자 정책 참여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038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공주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및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 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 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 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 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 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담당관・과・팀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 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표창 및 부상금 등)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창안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0조(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운영 지원)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6조, 제17조 관련)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5점 이상
은 상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88점 이상
동 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80점 이상
장 려 상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70점 이상
노 력 상	3만원 이하 공주사랑상품권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8조 관련)

구 분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업무 관련 창안 채택	금 상	특별승급 1호봉	0.8	
	은 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5	
	동 상		0.3	

〔비고〕 창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1 - 112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금학동 106번지 일원 금학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금학동 1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금학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3,150	■ 주차장 조성1식 - 주차장 800㎡, 통로 1,300㎡, 녹지1,050㎡	

5. **사업기간 :** 2011. 10 ~ 2011. 11.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성 명
(법인명)</td><td colspan="2">공주시장</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4">307-83-03046</td></tr>
<tr><td>주 소</td><td colspan="7">공주시 봉황로1</td></tr>
<tr><td>시행자</td><td colspan="7">공주시장</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7">공주시 봉황로1</td></tr>
<tr><td colspan="9">준 공 내 용</td></tr>
<tr><td colspan="2">사 업 명 칭</td><td colspan="7">금학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td></tr>
<tr><td colspan="2">사 업 목 적</td><td colspan="7">주차장 조성</td></tr>
<tr><td colspan="2">사 업 위 치</td><td colspan="2">금학동 106번지 일원</td><td>사업면적(㎡)</td><td colspan="3">3,150</td></tr>
<tr><td colspan="2">시 행 방 법</td><td colspan="2">도급시행</td><td>시행기간</td><td colspan="3">2011. 10. ~ 2011. 12</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현황(㎡)</td><td>지목별</td><td>106</td><td>106-2</td><td></td><td></td><td></td><td></td><td>계</td></tr>
<tr><td>면적(㎡)</td><td>2,515</td><td>635</td><td></td><td></td><td></td><td></td><td>3,150</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용도별</td><td colspan="2">건축면적</td><td colspan="5">기타</td></tr>
<tr><td>면적(㎡)</td><td colspan="2">-</td><td colspan="5">- 주차장 조성 3,150㎡</td></tr>
<tr><td rowspan="2">기반시설계획</td><td>시설별</td><td colspan="7"></td></tr>
<tr><td>개 요</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소요사업비</td><td colspan="2"></td><td>공사완료일</td><td colspan="3">2011. 11.23</td></tr>
</table>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11 - 113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공주시의회 공인조례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교부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글자체(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 변경
2. 등록 및 폐기일 : 2011. 12. 31.
3.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붙임 참고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구 분	공 인 명	인 영	비 고
등록	공주시 의회인		
등록	공주시 의회의장인		
등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등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등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등록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비 고
폐기	공주시 의회인		
폐기	공주시 의회의장인		
폐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폐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폐기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공고 제2011-1140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등의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서면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토록 함

(안 제5조)

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협조자의 보호 사항 등 부조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기준(별표)에 따라 지급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가. 당초 :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09일까지

나. 변경 :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2081 FAX : 041) 840-21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보상금은「공주시 포상 조례」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공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신고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입금, 현금지급, 대리인 지급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보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신고보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1	제2조제4호가목 관련	○ 금품을 주고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4호나목 관련	○ 추가 징수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제2조제4호다목 관련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

［별지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제4조제3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공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 공고 제2011 - 115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11. 12. 30.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 일원
2. 열람내용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④	체육시설	골프장	공주시 계룡면내흥리 산28-1번지 일원	-	증) 101,034	101,034	-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5	4~6	국지도로	114	계룡면 내흥리 산28-1	계룡면 내흥리 835	일반도로	-	-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11. 12. 30. ~ 2012. 1. 19.
4.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과(☏ 041-840-8548)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041-840-8383)
계룡면사무소(☏ 041-840-8383)
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 : 게재 생략
6.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 공람 대장

○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과, 문화체육과, 계룡면사무소

○ 공람기간 : 2011. 12. ~ 2012. 1.

일련번호	공람일자	공 람 자		날인(서명)	의견제출		비고
		주 소	성 명		유	무	

의 견 제 출 서 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공주시 공고 제 2011 - 1154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2012. 7.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3개면 21개리 지역주민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함께 했던 생활을 영원히 기억하고

○ 앞으로도 우리시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공주인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공주시 명예 면・동・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주민과 앞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

나. 설치(안 제3조)

명예 면·동·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다. 기능(안 제4조)

○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라.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협의회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마. 지원(안 제6조)

시장 또는 해당 면·동장은 명예 면·동·리제의 활성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종특별시출범준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화 : 041)840-8737　　FAX :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3개면 21개리 지역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3. “편입지역 주민”이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명예 면·동·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시장 또는 해당 면·동장은 명예 면·동·리제의 활성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1 - 1157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공주시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고,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1.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공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공인 글씨 및 규격 변경
2. 사용개시일 : 2012. 1. 2.
3. 재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포함)

공 인 명	구 분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장인	재등록	3.0㎝×3.0㎝ (정방형)		전자이미지공인 포함
	폐 기	2.4㎝×2.4㎝ (정방형)		전자이미지공인 포함